

《2024. 2월 1차》
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**과 **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

청탁금지법 주요 판례 : 골프편



관련 근거

○ 청탁금지법 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3. “금품등”이란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나.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 제공

○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

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
관련 판례

○ 직무관련 있는 OO공사 직원A에게 민원인B가 골프라운딩 시 본인의 회원권 혜택을 통해 33,350원 할인(그린피 20% 할인 : 13,350원, 카트비 무료 : 20,000원)하여 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

○ A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B가 OO군 도시건축과 소속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 C와 골프를 칠 때 골프내기에서 저서 B가 C의 골프비용을 부담하였을 시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

○ □□군 소재 골프장에서 공공기관 직원A는 일반요금 입장료 200,000원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골프회원권을 소지한 OO주식회사 대표이사B의 골프회원권 동반자 할인혜택을 적용받아 입장료 5,000원만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

**부조리
신고**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 클릭)
- 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